

춘천지방법원 2022. 11. 15 선고 2022가단3377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1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1. 4. 6. 접수 제5023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따르면,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

한다)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1. 4. 6. 접수 제5023호로 2001. 3. 28.
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, 채무자 원고,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청구의 요지

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.

3. 직권 판단

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.

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,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,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인 권리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도현

